DV-520-INFO K 청문 출석 준비(보호 대상자용)

준비를 하십시오.

- 귀하의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경찰 또는 의료 보고서, 임대 계약서 또는 영수증, 사진, 청구서 등)를 지참하십시오. 모든 서류의 사본 2부를 지참하고 송달 증명서를 포함하는 양식들을 제출하십시오.
- 친구나 친척("후원자")을 대동 수 있으나 법정에서 귀하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귀하의 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을 참석 시킬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허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증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진술서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서는 DV-100과 DV-110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어린이를 입장시키지 않습니다. 법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대기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청문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청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금지 명령은 종료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0분 일찍 도착하십시오.

- 법정을 찾으십시오.
- 법정이 문을 열면 들어가서 서기 또는 집행관에게 출석했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 금지 대상자가 두려우면 집행관에게 말씀하십시오.
- 다른 사건들을 방청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 두십시오.
- 귀하의 이름을 부르면 법정의 앞쪽으로 걸어나가십시오.
- 청문은 단 몇 분에 끝날 수도 있고 길어도 한 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 많은 경우, 법원에서 몇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를 제출할 때 서기에게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법정 통역사를 구할 수 없으면 귀하를 위해 통역할 사람을 대동하십시오. 자녀, 보호 대상자, 또는 증인에게 통역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의 제공 신청

재판일 최소한 5일 전에 신청하면 보조 청취 시스템, 컴퓨터 지원 실시간 자막, 또는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기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www.courtinfo.ca.gov/forms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및 명령(MC-410 양식)을 입수하십시오. (민법 § 54.8.)

진술할 내용을 연습하십시오.

발부 받기를 원하는 명령의 리스트를 만들어 그것을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원하는 내용을 3분 이내에 말하십시오.

청문에서 긴장이 되면 리스트를 읽으십시오. 이 리스트를 사용하여 판사가 신청한 모든 명령을 발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천천히 말하십시오. 리스트를 읽어도 좋습니다.
- 금지 대상자나 그의 변호사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완전하게 답변하십시오.
-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I don't understand the question)"라고 말씀하십시오.
- 금지 대상자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판사에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 귀하가 질문할 차례가 아니면 판사에게만 말씀하십시오.
- 사람들이 판사에게 말하고 있을 때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말에 관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 청문에서, 판사는 명령을 거부할 경우 귀하의 안전과 양육권, 방문권 및 자녀 부양비 신청 대상자인 자녀의 안전이 위험한지 고려합니다. 귀하와 자녀의 재정적 필요와 관련된 안전 문제도 고려합니다.
- 청문이 끝나면 판사가 발부할 명령을 결정합니다.
- DV-130 양식에 판사가 판결한 명령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때로는 서기가 귀하를 대신해서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을 청문 전에 작성했으면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양식을 검토하고 모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이 있으면 즉시 서기에게 말씀하십시오.
- 판사는 명령을 판결한 후에 귀하가 작성한 DV-130 양식에 서명합니다. 이 양식을 서기에게 가지고 가서 제출하십시오. 서기가 사본을 최대 5부까지 되돌려줍니다.

판사는 귀하의 사건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날에 다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속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지 대상자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 판사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경우
- 청문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

판사에게 임시 명령을 새 청문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서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자녀 양육권이나 방문은 어떻게 될까요?

- 자녀 양육권이나 방문에 대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 판사는 귀하를 중재에 회부합니다. 중재는 양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양육권 및 방문 계획에 합의하도록 도와 줍니다.
-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금지, 양육권 및 방문 명령의 유효 기간을 다음 청문일까지 연장해 주도록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또는 다른 법원 명령을 받을 때까지.
- 각 부모는 중재인과 별도로 회의를 가질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신의 후원자를 중재에 대동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귀하를 대신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서기에게 법원이 귀하를 대신해서 DV-130 양식을 작성할 것인지를 문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귀하가 작성하십시오.
- 판사가 명령을 발부하면 서기에게 가서 DV-130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서기는 귀하를 대신해서 이 양식을 법집행기관이나 CLETS로 보냅니다. CLETS은 경찰에 이 명령에 대해 알려주는 주 전체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 금지 대상자가 청문에 참석했으면 그에게 DV-130 양식의 사본 한 부를 우편으로 송달하십시오. 송달인에게 금지 대상자에게 DV-130 양식을 송달한 후에 DV-250 양식을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금지 대상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판사의 명령이 임시 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DV-130 양식의 사본 한 부를 우송할 수 있습니다. 송달인에게 DV-250 양식을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금지 대상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판사의 명령이 임시 명령과 **다른** 경우에는 DV-130 양식을 우송할 수 없고 송달인이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인에게 DV-200 양식을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의 사항: 귀하와 다른 보호 대상자는 명령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보안관과 연방 보안관은 명령을 무료로 송달합니다. 법원 서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